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계획 알림 및 신청 안내문

1. 공급개요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전북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일원
- 주택명칭 : 군산 경남아너스빌 디오션 (시행/시공 : 경남기업(주))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5층/지상13~29층, 총 11개동 873세대 및 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10% 범위 내」

2) 기관 공급세대수 배분

구분		84A	84B	84C	84D	84E	105P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20(8)	3(1)	2(1)	2(1)	3(1)	0(0)	30(12)
합 계		20(8)	3(1)	2(1)	2(1)	3(1)	0(0)	30(12)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임.

2. 주택공급 일정(예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2.07.29.(금)	건본주택,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건본주택 개관	2022.07.29.(금)	전북 군산시 미장동 511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2.08.08.(월)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건본주택 방문청약 2022.08.08.(월) 10:00~14:00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2.08.17.(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정당계약 기간	2022.08.29.(월)~2022.08.31.(수)	당사 건본주택

※ 상기 일정은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국민은행 포함 숲 은행)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청약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방법, 유의사항

1)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에 의거 제35조제1항6호(장기복무제대군인), 7호(군인복지기본법), 17호(장애인), 23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 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세대수 : 전용 85㎡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① 장애인 : 전라북도청 장애인복지과 ②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동과 ③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 :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④ 중소기업 근로자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있음. ■ 당첨자 선정 업무와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실시함.
--	--	---

2)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 동호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 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제한 기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점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이 미달된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 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합니다.(동,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은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 65세이상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 한 경우만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하나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지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다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모두를 부적격 처리함.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공급(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 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 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경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 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2.07.29.(금) 공고 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군산 경남에너지빌 디오션’ 건본주택 및 안내 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1) 건본주택 : 전북 군산시 미장동 511번지

2) 분양문의 : 1533-0873